

‘의약품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의료법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이덕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국내 의료·제약 업계는 관계 당국의 리베이트 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가 반복되는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수 년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 1차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10개사에 합계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09년에도 7개 제약사에 대해 합계 20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2009년부터는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3차 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금년에는 검찰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합동수사를 벌여 지난해 도입된 쌍벌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의사를 구속기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리베이트란 판매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는 것으로 가격할인과 유사한 가격경쟁의 일환으로 이해돼 장려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제공자나 수령자 모두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만 유독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의 실제 소비자(환자)와 처방권자(의사)가 다른 상황에서 의사가 리베이트와 처방을 교환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 ▲리베이트가 반영된 금액으로 의약품의 거래가 이루어져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될까. 우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

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행정상 제재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제약협회가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제정한 것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공정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는 ‘유통질서 문란 억제’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인하조정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제약사들의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제약사들이 이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등 업계의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 관계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몇 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칼럼을 통해 과거 사례에서 법위반으로 판단되었던 행위들을 되짚어보는 한편 현행 법령상 정당한 마케팅 수단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